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74
----------	-------

발의연월일 : 2021. 6. 18.

발 의 자 : 조응천 · 강준현 · 김철민
박성준 · 박홍근 · 신정훈
오영환 · 이용우 · 조승래
한준호 · 홍기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우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료소송, 금융 관련 소송 등 복잡다기한 현대형 소송에서의 핵심 증거 및 정보는 대부분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 입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제도 등을 두고 있지만 실무에서의 소극적 운영, 제재 규정 미흡 등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증거 수집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일본

의 당사자조회 제도 등을 참고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화해를 권고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가.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제8절 ‘증거보전’ 부분을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로 확대 개편하여 병존하여 규정함.
- 나. 증거보전과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요건과 관할법원, 신청의 방식에 대해 규정함(안 제375조부터 제377조까지).
- 다.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법원의 변호사 선임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증거보전 신청의 요건으로 무과실을 추가함(안 제377조의2 및 제378조).
- 라. 증거보전의 효과를 강화하고 증거은닉과 변작행위에 대한 제한을 위해 법원이 증거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79조).
- 마.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에서도 법원이 증거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증거조사 없이 신청을 기각할 사유를 규정함(안 제380조).
- 바.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결정이 있는 후에도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비밀 등 관련 사유 존부

판단을 위해 비공개 심리절차를 둠(안 제380조의2 신설).

사.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방법과 제재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 증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도록 하고, 본안 전 증거보전 및 증거개시 기록은 증거조사를 한 법원에 보관하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수소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81조).

아.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증거조사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구체화하는 협의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증거개시결과를 정리하는 기일을 열어 증거조사결과 등을 정리하여 조서화하도록 함(안 제382조).

자.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를 담당한 법원이 어느 단계에서라도 분쟁의 화해적 해결이 예상된다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3조).

차.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 비용은 향후 본안소송 판결 시 소송비용에 산입되도록 하고, 신청인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은 증거개시절차에 응대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의 청구를 위하여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84조 및 제384조의2).

카. 증거유지명령에 위반하여 증거를 위조, 변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제재를 부과하고 그 밖에 위반행위로 증가된 신청비용 및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위반자가 부담하게 함(안 제384조의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제3장 제8절의 제목 “증거보전”을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로 한다.

제3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5조(신청의 요건) ① 당사자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민사상 다툼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때에는 그 다툼의 해결에 필요한 증거조사(이하 “소제기 전 증거조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제376조의 제목 “(증거보전의 관할)”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소를”을 “본안의 소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소를”을 “본안의 소를”로, “검증”을 “검증·감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를”을 “본안의 소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은 본안의 소의 관할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관할법원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급박한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할 수 있다.

제377조의 제목 “(신청의 방식)”을 “(신청의 방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을 “신청서”로, “각호”를 “각 호”로, “밝혀야”를 “적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조사하고자 하는 증거
4.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사유
5. 앞으로 제기하려는 본안의 소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요지

③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어긋나는 경우와 신청서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7조의2(변호사 선임명령) ① 법원은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에는 제1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7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상대방을”을 각각 “과실 없이 상대방을”로 한다.

제379조 및 제38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9조(증거보전의 신청에 대한 재판 등) ① 증거보전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증거보전의 결정을 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기한을 정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증거(문서와 검증·감정의 목적물에 한정한다)를 현상 그대로 유지 및 관리하도록 명할 수 있다(이하 “증거유지명령”이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증거유지명령이 내려진 증거를 전자적 형태로 가지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증거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명령이 내려진 때의 현상대로 그 증거의 사본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후에 그 증거를 갱신할 수 있다.

⑤ 증거보전의 결정 및 증거유지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⑥ 제3항의 담보에는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

한다.

제380조(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에 대한 재판 등) ①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에 대한 재판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결정에 따른 증거유지명령에는 제37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주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을 한 경우
3. 소제기 전 증거조사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소제기 전 증거조사로써 당사자가 얻을 이익에 비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나치게 커다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소제기 전 증거조사를 신청한 증거 모두가 제38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0조의2(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할 사유) ① 법원은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결정이 있는 후에도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거조사를 하면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증거

2. 증거조사를 하면 사람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증거

3. 증거조사를 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증거

②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문서와 검증·감정목적물에 한정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증거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1조부터 제38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1조(증거조사 등) ① 증거보전절차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방법과 제재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증거조사의 기일은 당사자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양 쪽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절차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는 본안의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같은 효과를 가진

다.

⑤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은 본안의 소가 제기된 법원에 보내야 한다. 다만, 아직 증거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보낼 수 있다.

제382조(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협의 및 정리) ① 법원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증거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에 관한 협의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증거조사를 모두 마친 때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수 있는 정리기일을 열어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시행결과를 정리하고,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거조사의 결과 및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2. 제380조의2에 관한 사항
3.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어긴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정리기일조서에는 제152조, 제153조, 제155조제1항,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를 준용한다.

제383조(화해권고결정) ① 법원은 본안의 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증거보전절차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화해권고결정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화해권고결정에는 제225조부터 제232조제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225조제1항의 “청구의 취지”는 “본안의 소의 청구취지”로, 제228조제1항의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된 때까지”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로 각각 본다.

제384조(본안의 제소명령 등) ① 당사자가 증거보전절차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가 끝난 후에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 안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당사자에게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편제3장제8절에 제384조의2 및 제38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4조의2(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 등) ①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은 본안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② 소제기 전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의 계산을 위한 소송목적의 값은 제377조제2항제5호를 참작하여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송목적의 값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③ 법원은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소송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제384조의3(증거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의 제재) ①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379조제3항·제4항 및 제380조제1항의 증거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위반한 사람에게 이로 말미암은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과 본안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판절차와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8절 <u>증거보전</u></p> <p>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u>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u></p> <p>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 증거보전의 신청은 <u>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u></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절 <u>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u></p> <p>제375조(신청의 요건) ① 당사자는 <u>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u></p> <p>② 당사자는 <u>본안의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민사상 다툼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때에는 그 다툼의 해결에 필요한 증거조사(이하 “소제기 전 증거조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u></p> <p>제376조(관할법원) ① ----- -----<u>본안의 소를</u>----- ----- -----<u>본안</u> -----<u>의 소를</u>----- ----- -----<u>검증·감정</u>----- -----</p>

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377조(신청의 방식) ① 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 4. (생략)

② 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신 설>

-----.

② -----본안의 소를-----

-----.

③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은 본안의 소의 관할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관할법원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급박한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할 수 있다.

제377조(신청의 방식 등) ① ----

----신청서-----각 호-----적어야-----.

1. ~ 4. (현행과 같음)

②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조사하고자 하는 증거

4.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사유

5. 앞으로 제기하려는 본안의 소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요지

③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

<신 설>

<신 설>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거조사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어긋나는 경우와 신청서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77조의2(변호사 선임명령) ① 법원은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에는 제14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78조(과실 없이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
과실 없이 상대방을-----
-----.

-----.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
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
다.

제379조(증거보전의 신청에 대한
재판 등) ① 증거보전의 신청
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
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의 결정
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증거보전의 결정을
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기한을
정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증거(문서와 검
증·감정의 목적물에 한정하
다)를 현상 그대로 유지 및 관
리하도록 명할 수 있다(이하
“증거유지명령”이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적당
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증거
유지명령이 내려진 증거를 전
자적 형태로 가지고 있고, 업무
상 이유 등으로 그 증거를 갱
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원의 허가를 받아 그 명령이
내려진 때의 현상대로 그 증거

제380조(불복금지)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의 사본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후에 그 증거를 갱신할 수 있다.

⑤ 증거보전의 결정 및 증거유지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⑥ 제3항의 담보에는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제380조(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에 대한 재판 등) ①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에 대한 재판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결정에 따른 증거유지명령에는 제37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주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을 한 경우

<신 설>

3. 소제기 전 증거조사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소제기 전 증거조사로써 당사자가 얻을 이익에 비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나치게 커다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소제기 전 증거조사를 신청한 증거 모두가 제38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80조의2(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할 사유) ① 법원은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결정이 있는 후에도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거조사를 하면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증거

2. 증거조사를 하면 사람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증거

3. 증거조사를 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증거

②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문서와 검증·감정목적물에 한정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증거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1조(당사자의 참여) 증거조사
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1조(증거조사 등) ① 증거보전절차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방법과 제재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증거조사의 기일은 당사자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양 쪽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절차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는 본안의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

⑤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은 본안의 소가 제기된 법원에 보내야 한다. 다만, 아직 증거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보낼 수 있다.

제382조(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협의 및 정리) ① 법원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증거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

출하게 하거나, 그에 관한 협의 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증거조사를 모두 마친 때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수 있는 정리기일을 열어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시행결과를 정리하고,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거조사의 결과 및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2. 제380조의2에 관한 사항

3.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어긴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정리기일조서에는 제152조, 제153조, 제155조제1항,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를 준용한다.

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383조(화해권고결정) ① 법원은 본안의 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증거보전절차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화해권고결

제384조(변론에서의 재신문)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정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화해권고결정에는 제225조부터 제232조제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225조제1항의 “청구의 취지”는 “본안의 소의 청구취지”로, 제228조제1항의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된 때까지”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로 각각 본다.

제384조(본안의 제소명령 등) ① 당사자가 증거보전절차 및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절차가 끝난 후에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 안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

<신 설>

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당사자에게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84조의2(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 등)

①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은 본안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② 소제기 전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의 계산을 위한 소송목적의 값은 제377조제2항제5호를 참작하여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송목적의 값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③ 법원은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소송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4조의3(증거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의 제재) ①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379조제3항·제4항 및 제380조제1항의 증거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위반한 사람에게 이로 말미암은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과 본안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판절차와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39
----------	-------

발의연월일 : 2021. 6. 21.

발 의 자 : 조응천 · 강준현 · 박성준
박홍근 · 신정훈 · 오영환
이용우 · 조승래 · 한준호
홍기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증거가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의 입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등의 영향을 받아 2002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 확대(제344조제2항), 문서의 일부제출제도(제347조제2항), 비밀심리절차(제347조제4항)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운용, 문서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인해 증거의 구조적 편중에 따른 사실심의 불합리성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심리요인을 제거하고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활성화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확충에 따른 법원의 사실심 심리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가. 당사자나 제3자의 일반적 문서제출의무를 규정한 후 문서제출의무의 예외적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와 그 면제사유의 존부 및 소명책임 소재에 관한 해석을 간명하게 함(안 제344조).
- 나. 문서제출의무자를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문서를 점유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문서의 간접점유자를 문서제출의무자에 포함시키고, 문서제출신청에 밝혀야 할 사항 중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을 ‘문서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으로 개정함(안 제345조).
- 다.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3자에 대한 제출신청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절차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며,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현행 ‘즉시항고’에서 ‘이의신청’으로 개정함(안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
- 라. 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상대방이 해

당 문서에 대한 법원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의 제재를 강화하여,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9조제2항 및 제350조제2항 신설).

마. 상대방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목록 제출명령이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하고 뒤늦게 해당 문서를 자신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1조의2 신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를 점유하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04조부터 제306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에서 정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2.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제1호 이외의 문서로서 제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문서
3. 문서를 점유하는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4. 제3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5.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는 문서로서 제출될 경우 그 사람의 사회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문서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서를 점유하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점유하는 때

2. 당사자가 문서를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문서에 대한 열람 또는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제3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가진”을 “점유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서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

제346조 중 “상대방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점유하는 문서”로 한다.

제3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7조(상대방에 대한 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 ① 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문서를 점유하는지와 그 문서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법원은 상대방이 문서를 점유하지 아니한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그 문서를 점유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신문절차에는 제6절의 규정을,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 대한 신문절차에는 제2절의 규정을 각각 준

용한다.

④ 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상대방에게 문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의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문서를 점유한다고 스스로 인정한 경우
2. 상대방이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문서를 점유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3. 상대방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신문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 본문에 따른 신문결과나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이 문서를 점유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의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신청대상인 문서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7조의2(제3자에 대한 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 ① 법원

은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이 있으면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을 심문한다. 다만, 제3자가 문서를 점유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가 문서를 점유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제3자에게 문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의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에는 제34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348조 및 제34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8조(이의신청) ①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49조(상대방이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① 상대방이 제346조 및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문서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서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문서의 기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증명할 사실에 관한 그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0조의 제목 중 “당사자가”를 “상대방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당사자가 상대방의”를 “상대방이 당사자의”로, “상대방의 주장”을 “당사자의 주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51조 중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로, “제318조”를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3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1조의2(문서제출명령을 위반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상대방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문서 목록이나 문서를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346조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문서목록을 제출한 경우
2.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문서를 제출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p> <p>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p> <p>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p> <p>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p>	<p>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를 점유하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제304조부터 제306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에서 정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p> <p>2.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제1호 이외의 문서로서 제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문서</p> <p>3. 문서를 점유하는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p>

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 1. 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

4. 제3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5.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는 문서로서 제출될 경우 그 사람의 사회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문서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서를 점유하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점유하는 때
- 2. 당사자가 문서를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문서에 대한 열람 또는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

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 2. (생략)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생략)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각 호-----

- .
1. · 2. (현행과 같음)
 3. -----점유하는-----
 4. (현행과 같음)
 5. 문서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

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출) -----

-----상대방-----

-----점유하는 문서-----

제347조(상대방에 대한 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 ① 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문서를 점유하는지와 그 문서가 제344조

②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법원은 상대방이 문서를 점유하지 아니한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그 문서를 점유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신문절차에는 제6절의 규정을,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 대한 신문절차에는 제2절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④ 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상대방에게 문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의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문서를 점유한다고 스스로 인정한 경우

2. 상대방이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문서를 점유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3. 상대방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신문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 본문에 따른 신문결과나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이 문서를 점유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문서 제출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의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신청대상인 문서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아니

<신 설>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된다.

제347조의2(제3자에 대한 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

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

① 법원은 제3자에 대한 문서 제출신청이 있으면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을 심문한다. 다만, 제3자가 문서를 점유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3자에 대한 문서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가 문서를 점유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제3자에게 문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의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에는 제34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348조(이의신청) ①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49조(상대방이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① 상대방이 제346조 및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문서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서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문서의 기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증명할 사실에 관한 그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0조(상대방이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① 상대방이 당사자의-----

-----당사자의 주장-----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
제34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

제351조의2(문서제출명령을 위반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상대방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문서목록이나 문서를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346조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문서목록을 제출할 경우
2.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문서를 제출할 경우